

대학평의원회 소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운영세칙

(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평의원회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대학평의원회에 다음의 소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둔다.

1. 예·결산자문소위원회
2. 현장·학칙검토소위원회
3. 교육과정자문소위원회

② 대학평의원회에 다음 각 호의 안건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자문 또는 검토사항이 아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의장이 부의한 사항
3.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연명으로 부의한 사항
4. 기타 대학평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항 소정의 재배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의장은 각 평의원의 희망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자가 2인 이하 또는 5인을 초과하는 경우 및 희망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평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배정 또는 재배정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등) ① 소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학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정족수) 소위원회는 소속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장은 사안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소속 평의원에게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대학평의회의 결의로써 기간을 정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등)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활동내용과 결과 및 등을 수시로 대학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0-25-2 대학평의원회 소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운영세칙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결의로써 위원장에게 특정한 활동내용 등의 상세보고를 지시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대학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소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